#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권은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095

발의연월일: 2020. 12. 3.

발 의 자:권은희・金炳旭・하태경

이태규 · 장제원 · 유의동

정희용・김 웅・최연숙

성일종 • 황보승희 • 김형동

의원(12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연일 발생하는 아동학대와 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 실정임. 2019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행위자의 75.6%가 부모로 여전히 가정 내 또는 양육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 발견율은 3.81%에 불과하며, 재학대 발생 건수도 3,431건으로 5년 만에 약 3배 증가했음.

현행법은 시·군·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근로환경과 처우 등의 문제로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, 짧은 근무기간으로 인한 전문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. 또한 사례관리 거부 시 이를 처벌하거나, 피해아동 발견 시 즉각 분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는 등 체계적인 아동학대방지에 한계가 있음.

이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필수근무기간을 정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, 배치기준을 마련하며, 사례관리 거부 시 이를 처벌하고, 피해아

동은 즉각 분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쉼터,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충분히 확보하여 피해아동을 학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10조의2, 제21조, 제22조, 제22조의6, 제45조, 제53조의2 및 제71조).

####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2제2항제6호 중 "제22조제6항 각 호"를 "제22조제7항 각 호" 로 한다.

제21조제1항 본문 중 "제22조제4항에"를 "제22조의6에"로 한다.

제22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고,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·방법·절차 등에 따라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발견하는 즉시 보호자로부터 분리하여 심의위원회의 보호조치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보호하여야 한다.

제22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2조의6(아동학대전담공무원) ①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 장은 아동학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(이 하 "아동학대전담공무원"이라 한다)을 두어야 한다.
  - ②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특

별한 사정이 없으면 필수보직기간은 3년으로 하며, 그 밖에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·도 또는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다.

- ③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제22조제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업무를 수행한다.
-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시·도 또는 시·군·구 관할 구역의 아동의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인력 및 배치 기준 등을 마련하여야 하고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그기준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.

제45조제2항 본문 중 "아동보호전문기관을"을 "아동보호전문기관을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등을 고려하여"로 하고,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.

제53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"시장·군수·구청장"을 "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"으로, "지정할 수 있다"를 "지정하여야 한다"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학대피해 아동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 학대피해아동의 특성, 관할 구역의 아 동의 수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요를 고려하여야 한다.

제71조제2항에 제2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4.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 재발 방

지 등을 위한 업무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의2(아동권리보장원의 설	제10조의2(아동권리보장원의 설
립 및 운영) ① (생 략)	립 및 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보장원은 다음 각 호의 업	②
무를 수행한다.	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6.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	6
위한 <u>제22조제6항 각 호</u> 의 업	<u>제22</u> 조제7항 각 호
무	_
7. ~ 13. (생 략)	7. ~ 13. (현행과 같음)
③ ~ ⑧ (생 략)	③ ~ ⑧ (현행과 같음)
제21조(보조인의 선임 등) ① 법	제21조(보조인의 선임 등) ①
원의 심리과정에서 변호사, 법	
정대리인, 직계 친족, 형제자매,	
제22조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	<u>제22조의6에</u>
전담공무원, 보장원 또는 아동	
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학대	
아동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	
조인이 될 수 있다. 다만, 변호	
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	
가를 받아야 한다.	
②・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22조(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	제22조(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
의무) ① ~ ③ (생 략)	의무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	<u>&lt;삭 제&gt;</u>

수·구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 학대전담공무원(이하 "아동학 대전담공무원"이라 한다)을 두 어야 한다.

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「사 회복지사업법」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 람으로 하고 그 임용 등에 필 요한 사항은 해당 시·도 또는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다. <신 설>

⑥·⑦ (생 략)

<신 설>

<삭 제>

⑥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·방법·절차 등에 따라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발견하는 즉시 보호자로부터 분리하여 심의위원회의 보호조치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보호하여야 한다.

<u>⑦·⑧</u> (현행 제6항 및 제7항 과 같음)

제22조의6(아동학대전담공무원)
①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
수·구청장은 아동학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아동학 대전담공무원(이하 "아동학대

전담공무원"이라 한다)을 두어 야 한다.

- ②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「사 회복지사업법 |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 람으로 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필수보직기간은 3년으로 하며, 그밖에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 은 해당 시·도 또는 시·군· 구의 조례로 정한다.
- ③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제22 조제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6 항의 업무를 수행한다.
-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시·도 또는 시・군・구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 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인력 및 배치 기준 등을 마련하여야 하고, 시・도지사 또는 시장・ 군수・구청장은 그 기준에 따 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 야 하다.

등) ① (현행과 같음)

- 제45조(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제45조(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) ① (생 략)
  - ②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② ------

아동의 치료.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 기관을 시·도 및 시·군·구 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. 다 만, 시·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 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둘 이상의 시・군・구를 통 합하여 하나의 아동보호전문기 관을 설치 · 운영할 수 있다.

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아동보 | <삭 제> 호전문기관을 통합하여 설치・ 운영하는 경우 시・도지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・운 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 의 아동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・군수・구청장에게 공동 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
### ④·⑤ (생략)

제53조의2(학대피해아동쉼터의 제53조의2(학대피해아동쉼터의 지정)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 생활가정 중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, 치료,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

	<u>o}</u>	동보호전	]문
기관을 관할	구역의	아동의	수
등을 고려하	여		
<단서 삭제>			

④·⑤ (현행과 같음)

지정) ① 시・도지사 또는 시 장・군수・구청장-----

터를 <u>지정할 수 있</u>다.

<신 설>

제71조(벌칙) ① (생 략)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~ 2의3. (생 략) <신 설>

3. ~ 7. (생 략)

하여야 한다.
②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학대의해아동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 학대의해아동의 특성,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등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요를 고려하여야 한다.
제71조(벌칙) ① (현행과 같음)

1. ~ 2의3. (현행과 같음)
2의4.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
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
재발 방지 등을 위한 업무수
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
3. ~ 7. (현행과 같음)